
이용 안내서



“제일요양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효의 가치관이 변하고 핵가족, 소가족화로 가정 내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제일요양원에서는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전문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살겠습니다” 라는 원훈을 따라 어르신들에게 늘 가족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요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효(孝)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 요양원 소개

	제일요양원	설치일자	2015. 11. 09
급여종류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80명
대표자	최중희	협력의료	현대유비스병원
홈페이지	http://제일요양원.com/	전화번호	032) 876-3230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19 한림법조타운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1일 식사 및 간식비용 : 10,000 원 식대 3,000 원 (1식) / 간식 1,000원 원 (1회)	
	상급침실 비용	1인실 : 10,000 원 (1일) 2인실 : 3,000 원 (1일)	
시설규모	각층별 100평 규모 / 요양시설 2, 5, 6, 7층 (옥상정원) 지하1층 (사무실, 식당, 세탁실, 요양보호사실)		



구분	침실	사무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의료간호	물리(작업)치료	프로그램	식당/조리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
시설	○	○	○	○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③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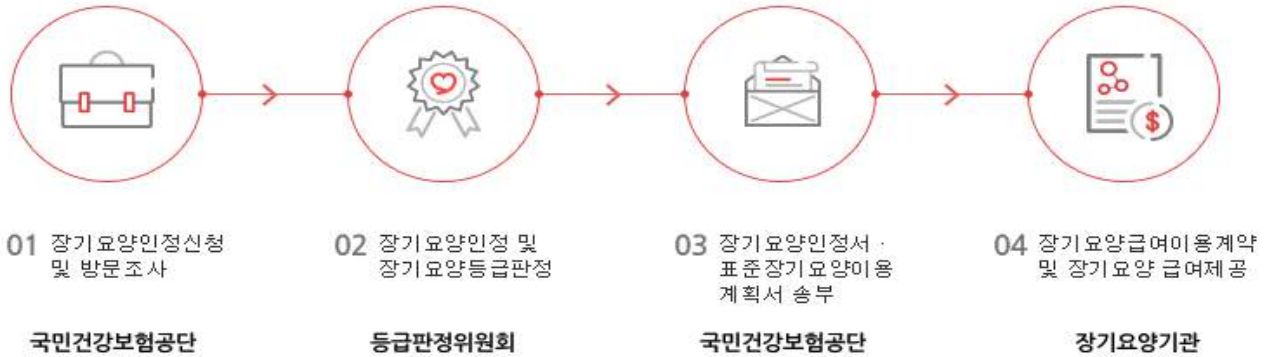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급여 : 본인부담금 20%(생활수준에 따라 60%, 40% 감경 적용)
(장기요양인정서에서 확인가능)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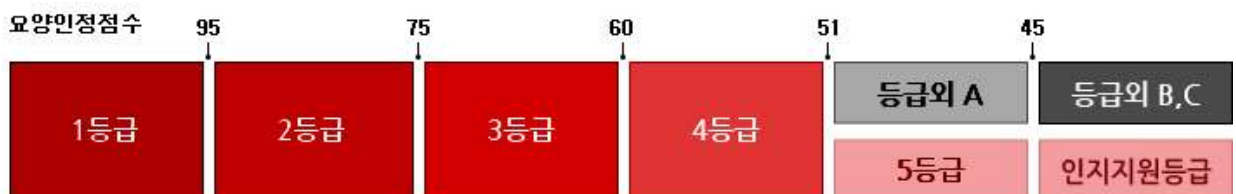
다.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 급여성서비스 안내

신체활동 지원	1. 세면도움	1) 세면도움
	2. 구강청결도움	1) 칫솔질 2) 의치손질 3) 구강청결(완전구강관리)
	3. 머리감기도움	1) 머리감기 2) 침상 머리감기
	4. 몸단장	1) 면도 2) 머리단장 3) 손, 발, 청결유지
	5. 옷갈아입기도움	1) 옷갈아입기
	6. 신체청결도움	1) 몸씻기 도움 2) 전신 및 부분 닦기
	7. 식사도움	1) 일반식사 2) 경관영양
	8. 체위변경	8. 체위변경
	9. 화장실 이용도움	1) 변기사용 2) 침상배변·배뇨 3) 기저귀 교환 4) 유치도뇨관 사용도움
	10. 이동도움	1) 침상내이동 2) 휠체어 이동 3) 보행 돕기
	11. 신체기능 유지증진	1) 관절구축(오그라듐) 예방 2) 일어나 앉기, 서기, 보행, 운동 도움 3) 보장구 이용도움 4) 경구약물 복용도움
	12. 산책(외출)동행	1) 산책(외출)동행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1. 인지관리지원	1. 인지관리지원
	2. 의사소통 도움	2. 의사소통 도움

기능회복훈련	1.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1.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2. 신체기능훈련·기본 동작훈련·일상생활 동작훈련	2. 신체기능훈련·기본동작훈련·일상생활 동작훈련
	3.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3.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5. 물리치료	1) 온냉열치료 2) 전기치료 3) 운동치료
	6. 작업치료	1) 언어치료 2) 작업치료

1. 관찰 및 측정	1) 건강상태 확인	(1) 활력징후 측정 (2) 신장, 체중, 가슴둘레 측정 (3) 혈당 측정
------------	------------	---

2. 건강 관리	1) 기초건강 관리	(1) 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2) 투약관리	(1) 약물 관리 (2) 투약이행관리 (3) 경구 투약 (4) 비위관·위관 투약 (5) 외용제 도포 및 좌약 삽입 (6) 인슐린 주사
	3) 감염간호	(1) 감염예방 (2) 손씻기 (3) 소독관리 (4) 감염성 폐기물 분류 및 수거
	4) 관절오그라듐 예방	(1)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2)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5) 치매돌봄 정보제공	(1) 치매약물 관리
	6) 인지훈련	(1) 인지기능 평가 (2)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7) 의료기관 의뢰 등	(1) 촉탁의 진료지원 (2) 의료서비스 진료지원
3. 간호관리	1) 욕창관리	(1) 욕창예방 (2) 욕창간호
	2) 영양관리	(1) 영양상태확인 (2) 비위관 관리 및 경관영양 식이제공
	3) 배설관리	(1) 배뇨훈련 (2) 유치도뇨관 관리 (3) 관장

● 일일 생활시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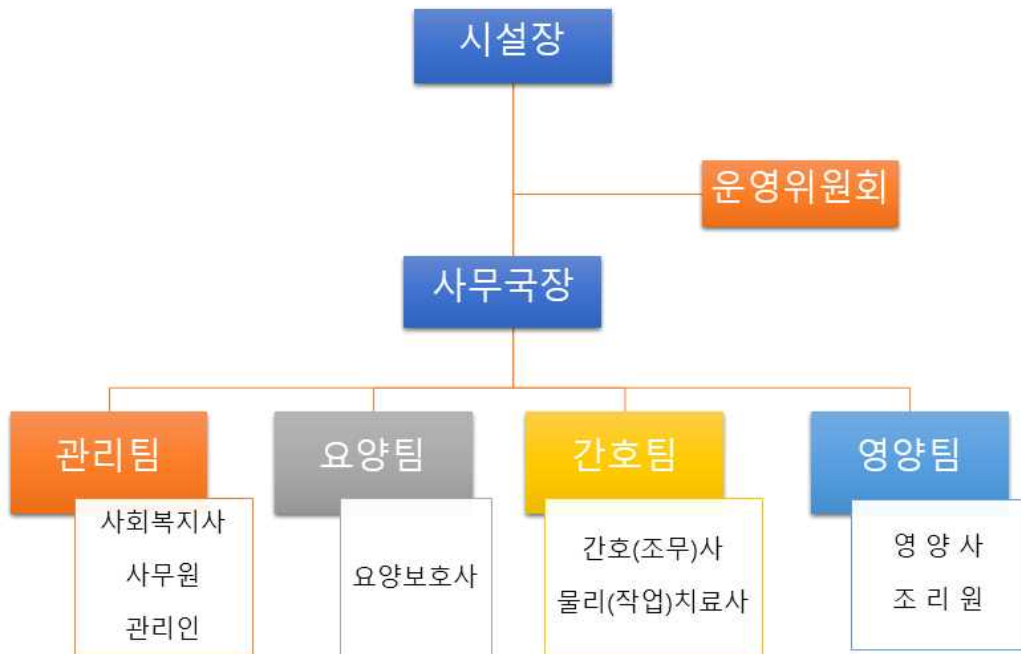
시 간	업 무 내 용	담 당 자	비 고
06:00~07:00	기상 및 라운딩, 어르신 세안 기저귀 케어	요양보호사	
07:00~08:00	청소 및 식사준비 (앞치마, 물통, 양치도구)	요양보호사	
08:00~09:00	식사도움 및 양치, 약복용 도움, 식사 뒷정리, 환기	요양보호사	와상환자 제외하고 거 실에서 식사
09:00~09:30	아침회의 & 체조 & 티타임	요양보호사	
09:30~10:00	기저귀 케어	요양보호사	
10:00~11:00	목욕/ 생활방 정리정돈	요양보호사	
11:00~12:00	식사 준비 (앞치마, 물통, 양치도구)	요양보호사	
12:00~12:30	식사도움 및 양치, 약복용 도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와상환자 제외하고 거 실에서 식사
12:30~13:30	점심식사 및 휴게시간	요양보호사	
13:30~14:00	기저귀 케어 및 기능회복훈련	요양보호사	
14:00~15:00	프로그램 활동 보조 & 티타임 간식 배식/정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불참자 :개별프로그램진행
15:00~15:30	생활방 및 시설청소, 어르신 사물함 정리	요양보호사	
15:30~16:30	기저귀 케어, 쓰레기 정리	요양보호사	
16:30~17:00	저녁식사 준비	요양보호사	
17:00~17:30	식사도움 및 양치, 약복용 도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와상환자 제외하고 거 실에서 식사
17:30~18:00	뒷정리 및 시설청소 실시	요양보호사	시설장, 팀장 시설 라운딩 실시
18:00~19:30	어르신들 거실에서 휴식	요양보호사	
19:30~20:30	시설내부, 화장실청소 취침 전 약복용	요양보호사	
20:30~21:00	기저귀 케어 및 어르신 취침준비	요양보호사	
21:00~22:00	급여제공기록부 정리	요양보호사	
22:00~06:00	심야휴게 및 입소자 관찰활동 기저귀교환, 체위변경, 안전점검	요양보호사	1인당 4시간씩 교대취침 실시

○ 프로그램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기능회복 훈련(20분)	기능회복 훈련(20분)	기능회복 훈련(20분)	기능회복 훈련(20분)	기능회복 훈련(20분)	기능회복 훈련(20분)	기능회복 훈련(20분)
인지프로 그램(50분) 열매반	인지프로 그램(50분) 꽃반	인지프로 그램(50분) 새싹반				
				여가프로 그램 (50분) 햇님/달님		

▶ 매월 가족친지 (생신잔치) 진행 /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변동가능 (자체진행)
▶ 어버이날 행사 및 송년행사 진행 /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변동가능 (자체진행)

● (2022.1월 기준 제일요양원 현황)



○ 종사자 근무체계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영양사	세탁원	관리인
1	1	2	4	1	32	1	3	1	1	1
24시간 주야간 교대근무 체계 / 야간 22:00~06:00 적요										

○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수가

분	금액(원)/ 1일당
(구 노인복지법)	
① 장기요양1등급	74,850
② 장기요양2등급	69,450
③ 장기요양,3,4,5등급	64,040

○ 급여 및 비급여 내역

- 식사재료비 1식 3,000원, 간식비 일일 1,000원일 경우 산정
- 시설입소 본인부담금 20%(생활수준에 따라 60%, 40% 감경 적용)

요양등급	일일급여	월 금액 (30일 기준)	입소자 부담료(30일 기준)				비고
			개인부담 보험료	식 대	간 식	계	
1등급	74,850	2,245,500	449,100	270,000	30,000	749,100	일반
			269,460	270,000	30,000	569,460	40%
			179,640	270,000	30,000	479,640	60%
2등급	69,450	2,083,500	416,700	270,000	30,000	716,700	일반
			250,020	270,000	30,000	550,020	40%
			166,680	270,000	30,000	466,680	60%
3,4,5 등급	64,040	1,921,200	384,240	270,000	30,000	684,240	일반
			230,540	270,000	30,000	530,540	40%
			153,690	270,000	30,000	453,690	60%

○ 계약의사

초진	재진
16,480	11,780

※수급자 본인부담금 적용하여 금액책정

일반 20% 의 경우 : 초진비용 16,480원 의 20% 비용부담 3,290원
 재진비용 11,780원 의 20% 비용부담 2,350원

○ 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 내용	계약기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요양보호시설전문인배상책임	2021년 11월 15일 ~ 2022년 11월 15일

● 노인학대예방 정보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기억해주세요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안니다.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다름,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코로나 대응 현황

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상 황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생활시설 면회	비접촉 면회 실시				면회 금지
이용자·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				
이용시설 운영	운영	정상 운영			운영 중단 권고 ※긴급돌봄서비스 시행
	주의사항	1) 이용시설 차량내 손소독제 구비 및 승차·하차시 손소독제 사용 2) 시설 이용시에는 행동장애 및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3) 이용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시 4㎡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의전화
1577-1000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절차

대한민국 아들·딸의 이름으로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어르신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돌보겠습니다.



01 신청
클릭



02 인정조사
클릭



03 등급판정
클릭



04 이용계획서
클릭



05 결과통지
클릭



06 서비스이용
클릭







● 우수사례

비접촉 면회실 마련

면회실을 만들어 보호자분들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면회를 진행



밴드 소통

요양원 전용 밴드를 만들어 보호자분들과 원활한 소통 진행



제일요양원

